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33호 2023. 7. 3.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63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6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965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2966호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967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23
- 정선군 조례 제2968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969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2970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43

- 정선군 조례 제2971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82호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55
- 정선군 규칙 제138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57
- 정선군 규칙 제1384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94
- 정선군 규칙 제1385호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1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2.)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3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을 “의장은 의원”으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단서 신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정선군의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	
			-- 법 제43조제1항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조(징계 등) ①	정선군의회의	의원-----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u>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u> 등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의 법 제44조를 위반한 <u>경우</u> ② (생략)	- <u>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u> ---. 1. ~ 6. (현행과 같음) 7. <u>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1. 품위유지 <신 설>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제4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2. 청렴의무 <신 설>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정책,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4. 회피의무 <신 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권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신 설>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공개사과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신 설>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6조 및 제9조, 별표)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2.)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u><신 설></u>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 ----. -----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u>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 <u>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 <u>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u> <u>③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u> <u>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u>

현행	개정안
<신 설>	<u>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u> 제7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u>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u>
<신 설>	② <u>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u> 2. <u>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u>
<신 설>	③ <u>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u>

□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담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안 제2조의2제1항)

나.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제3항)

징계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안 제2조의2제2항)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안 제2조의2제3항)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의 1/2 감액

다. 여비 정산 및 부담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제6조 및 제7조)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2.)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5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u> 제3조(허가권자) 제2조 <u>각 호의 1</u> <u>의 규정에 의한</u> 정선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u><신 설></u> ⑤ ~ ⑦ (생 략)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의사담당</u>이 된다. ③ (생 략)	<u>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u> 제3조(허가권자) ---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u>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u>의원이 아닌 위원</u>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u>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정담당</u>-----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u>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 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1. ~ 4. (생략) ② (생략)	<u>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 ----- . <u><후단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나.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다.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6조제2항) 의사담당 → 의정담당

라.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마. 공무국외활동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6호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시설국장이”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시설국장이”로 한다.

제3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시설국장이”로 한다.

제4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시설국장이”로 한다.

제5조(「정선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시설국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설국장이</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설국장이</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2조(구성) ① ----- ----- -- <u>시설국장이</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 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 원은 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 <u>시설국장이</u>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 (생 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u>시설국장이</u>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2021. 1. 1. 조직개편 이후 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국 소속 위원회 중 “부군수” 임명이 임의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소속 국장으로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국 소속 위원회 중 “부군수” 임명이 임의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을 소속국장으로 정비 및 임명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7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 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삭제 및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삭제

나.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개인분, 사업소분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8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① ----- -----.
1.----- -----500원	1.----- -----800원
2.----- -----1,000원	2.-----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되는 납세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안이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안 제10조제1항)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변경(안 제10조제2항)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목적세 → 보통세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69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세정발전”으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를 “징수업무”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

청 등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를 각각 “지난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30만원이하”를 “3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를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감사 및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7조제2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을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 또는”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를 “신청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에 따라” 로, “이를”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 로, “년도에” 를 “연도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u>과 <u>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u> 및 <u>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u>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u>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u> 2. 3. (생략)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u>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u>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u>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세정발전----- 규정하는 것-----. 제2조(지급대상) ① ----- 어느 하나에 -----. 1. ----- 징수업무-----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2.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중 “특별한 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현행	개정안
<u>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u>	<u>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u> <u>2.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u> <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u> <u>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u> <u>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u> <u>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u> <u>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u> <u>마.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정선군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u>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u>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5. (생략) 6. 제2조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u>지난 연도</u> ----- ----- ----- 2. <u>지난 연도</u> ----- ----- ----- 3. <u>지난 연도</u> ----- ----- ----- 4. 5. (현행과 같음) 6. ----- ----- 30만원 이하. --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

현행	개정안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u>의한</u> 포상금은 지급하지 <u>아니한다</u> .	----- ----- ----- <u>따른</u> ----- ----- <u>않는다</u> .
7. 제2조제1항제4호에 <u>의하여</u>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 <u>따라</u> ----- ----- -----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u>한하여</u> 지급한다.	② ----- ----- ----- <u>다만</u> ----- ----- <u>한정하여</u> ----- -.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u>각호</u> 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u>따른</u> ----- <u>각 호</u> ----- -----.
1. 지급기준에 <u>의한</u>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1. ----- <u>따른</u> ----- ----- -----
2. <u>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u> .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u>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u> .	2. <u>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u>

현행	개정안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감사 및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각 호 ----- -----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각 전문개정>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u>준</u> <u>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u> <u>⑤ (생략)</u> 제7조(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3조의 <u>각 호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u>지급하여야 할</u>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u>신청하여야 한다</u>. 제8조(지급) ① 군수는 <u>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u>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당해년도</u>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u>년도에</u>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u>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에 따른</u> ----- ----- -----. ③ <u>제1항에 따른</u> ----- ----- <u>따른</u> <u>다</u>. ④ ----- <u>지급하는 포상금은</u> <u>해당업무 부서의 장 또는</u> ----- ----- <u>신청한다</u>. 제8조(지급) ① ----- <u>제7조에 따</u> <u>라</u> -----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이를</u> ----- -. ----- <u>당해연도</u> ----- ----- <u>연도에</u>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현행	개정안
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 ----- ----- -----. ----- ----- ----- 않는다. ② ----- 해당 ----- ----- -----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 ----- ----- -----제43조에 따 른 ----- ----- -----.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한다.	-----.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항)

나.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보완(안 제2조제3항)

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

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심의위원에 민간전문가 포함
-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일본어 투 표현, 띄어쓰기 정비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0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 규정”을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4조----- -----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 -----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신 설>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 ----- -----.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따른 ----- ----- -----.

현행	개정안
<u>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u> <u>·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u>	<u><삭 제></u>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2023.3.28.)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나.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지표 대상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 조항 및 변경된 단어 반영(안 제2조, 별표)

1)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

※ 제34조제1항 :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제2항

3)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 제3항

4) 조례 제2조제2항 및 별표2 개별기준 제2항

: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5) 조례 제2조제3항 및 별표2 개별기준 제3항 : 유사명칭 → 동일명칭

나. 조례 6조(준용규정) 삭제(안 제6조)

다. 과태료 납부 대상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제290회 정선군의회(2023. 6. 1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1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총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도물 1m³당 사업비로 2016년 준공한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적용한다.

나. 시설용량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 적용한다.

원인자부담금 1m³당 사업비 산정기준

<총사업비>_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단위 : 백만원)

공 종	합계	덕송	남돌	조동	화암	임계	여량	구절	북평	광역	기타
총 공 사 비	38,338	8,692	885	2,663	891	3,628	847	805	2,344	11,774	5,809
1. 급수체계정비공사	90	-	-	-	-	-	-	-	-	90	
2. 블록시스템구축공사	4,702	824	107	300	197	585	83	127	227		
3. 관 망 정 비 공 사	17,964	5,496	358	1,700	258	1,684	320	295	1,455	4,519	1,879
4. 유지관리시스템	3,524	-	-	-	-	-	-	-	-	-	3,524
5. 기 타 시 설 공 사	5,388	1,129	188	322	203	603	214	156	341	2,232	
6 . 부 대 공 사	6,670	1,243	232	341	233	756	230	227	321	2,681	406

(주) 1. 총공사비는 최종 준공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용량>_정선군 정수시설 용량

구 분	수원종류	취 수 장		비 고
		명 칭	시설용량(m ³ /일)	
덕송 정수장	조양강 복류수	덕송취수장	5,200	
회동 정수장	계곡 복류수	회동취수장	500	
도사곡 정수장	계곡 복류수	도사곡취수장	1,500	
조동 정수장	동강 복류수	덕천취수장	4,500	
납돌 정수장				
화암 정수장	어천 복류수	화암취수장	1,000	
증산 정수장	척산천 복류수	증산취수장	600	
여량 정수장	골지천 복류수	여량취수장	1,000	
구절 정수장	계곡 복류수	구절취수장	900	
북평 정수장	골지천 복류수	북평취수장	1,000	
임계 정수장	임계천 복류수	임계취수장	700	
광역 상수도	광동댐		15,000	
계			31,900	

(주) 1. 시설용량은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준공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

2. 1m³당 단위사업비 : 1,308,400원_[기준일 : 2016. 12월]

가. 산출기준 : 총사업비(38,338백만원) ÷ 시설용량(31,900m³/일) ≒ 1,308,400원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단위사업비로 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5.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시 설 유 형 별		부 과 대 상	산 출 기 준
주거시설	제2호(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정선군세대당인구수×정선군1인1일급수량×1.36(첨두계수)
숙박시설	제15호(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제곱미터)×40리터×1.36(첨두계수)
판매·영업·업무시설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제곱미터)×30리터×1.36(첨두계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제곱미터)×25리터×1.36(첨두계수)
의료시설	제9호(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제곱미터)×40리터×1.36(첨두계수)
대단위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	일최대 용수 사용량
공장시설	제17호(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	사업계획서상 1일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 전액 부과
기타시설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자원순환관련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 제29호(야영장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제곱미터)×20리터×1.36(첨두계수)

(주) 1. 정선군 세대당 인구수 및 1인1일급수량은 과년도 12월 기준 정선군 통계에 따른다.

(주) 2. 첨두계수는 2022년 환경부 수도정비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합산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구경별 정액제로 한다.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

시설유형별	부과대상	산출기준		비고
소규모 시설	■ 제1호(단독주택) ■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부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13mm	100,000	
		20mm	300,000	
		25mm	500,000	
		32mm	1,00,000	
		40mm	1,500,000	
		50mm	2,500,000	
		75mm	5,000,000	
		100mm	10,000,000	
		150mm	20,000,000	
		200mm	30,000,000	
		250mm	50,000,000	
		300mm 이상	60,000,000	

1.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4.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6. 공장의 경우 공장승인(건축허가등) 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 계획량으로 부과한다. 다만, 추후 수돗물 사용량이 1일 신청사용량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 제안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책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부담금 산정기준의 단위사업비, 총사업비, 시설용량을 기준단가를 활용한 고정식 산출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산정기준 개정 (안 제5조제1항 별표1)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총사업비는 2016년 준공한 정선군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을 적용
- 시설용량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 적용
- 위 산식에 의한 단위사업비에 통계청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

규 칙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2호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칙의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

☐ 주요내용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폐지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 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 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시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분할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일시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처리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5.20.>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6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 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 준액	세율	세액	납부 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주소						담당 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 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 65 -

○○○의대

[illegible]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8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 액	세율	세액	납부 일	결 재		
		성 명 (법인 명)	생년월 일 (법인등록 번호)	주소						담당 자	담 당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제9조 관련)

○○년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 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 액	세 율	산출세 액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성명 (법인 명)	생년월 일 (법인등록 번호)	주소								담당 자	담 당	과 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0조제1항 관련)

○○년도

○○○의 답

[illegible]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0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방 소득 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방 소득 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방 소득 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방 소득 세	가산 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 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제12조 관련)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제13조 관련)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연월일 . . .			
공 부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제13조 관련)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 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 인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연월일 . . .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제13조 관련)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제13조 관련)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제14조 관련)

74

[illegible]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4.21.>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제17조제1항 관련)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 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 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 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 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접수자	접수일
의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뒤 면)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제17조제2항 관련)

○○년도

○○양과
다녀[illegible]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9조 관련)

○○년도

○○월분

접 수 번 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 리 일	주행 세 신 고 납부 일	주행 세 신고 일	주행 세 납부 일	송 금 일	결 재		
	주소	상호 (법인 명)	사업자등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	연락처	계	휘 발 유	경 유						담당 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제안이유

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삭제 및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삭제

나.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개인분, 사업소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4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부, 서류,” 를 “해당 장부·서류 또는” 으로,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을 “물건(이하 “장부 등” 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7.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소상공인기본법」” 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법 제76조제3항” 을 “법 제7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제96조 제1항제3호”를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로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u>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u> 를 말한다.	1. ----- ----- ----- ----- ----- ----- ----- ----- ----- <u>해당 장부·서류 또는 -----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u>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	② ----- ----- ----- -----.

현행	개정안
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6. (생략) ③ (생략) 제13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검증으로 조사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 대 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 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u>같은 법 제88조 제4항제2호</u> 단서에 따른 재조 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 6. (생략)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	1. ~ 5. (현행과 같음) 6. <u>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u> 7. <u>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 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 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같은 법 제88조제 5항제2호</u> ----- ----- -----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

현행	개정안
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u>법 제76조제3항</u>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다. 1. <u>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u>	한 세무조사 유예)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소상공인기본법</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 ----- ----- ----- -----<u>법 제77조제2항</u>----- ----- -----. 1. <u>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u>

현행	개정안
<u>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u>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u>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u>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삭 제> ② ----- -----

현행	개정안
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법 제88조제4항제2호</u> 단서 및 <u>제96조제1항제3호</u>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88조제5항제2호</u> ----- -- <u>제96조제1항제3호</u> 단서 또는 <u>법 제96조제6항</u> 및 「<u>국세기본법</u>」 <u>제65조제1항제3호</u> - -- 6.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 요 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조업 ()	
	건설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판매업 ()	
(전 화) (팩스)	운송업 ()	
○ 작성대리자 : (근무부서) (성명) (인)	기 타 ()	
(전 화) (팩스)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지방세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제출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서 작성서식 (첨부 서식 확인)
 -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명세서
 -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 ※ 표지(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반드시 법인 직인 날인 및 작성자 전화번호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접수 불가)
- 입증자료 제출 : 뒷 페이지 입증자료 확인
- 조사서는 반드시 사업장별, 사업연도별[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 (5개년) 각각 작성] 제출
- 작성 후 보낼 곳 :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 문의전화 : 033) 560-〇〇〇〇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입증자료)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각 사업연도별 법인장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변동이 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포함)
 - 법인소유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토지, 건물, 용지, 시설물(건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지급수수료, 건설중인자산,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그 밖의 비용계정 등
 - ※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미제출시에는 검토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

- ☐ 신·증축 건물 연도별 공사(분양)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토지 계약시점부터 건물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연도 전체

-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포함)
 -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포함 제출)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시공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 ☐ 리스계약서, 리스해지계약서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였거나 임차하였을 경우)

- ※ 첨부된 서류는 □내에 √ 표기하여 주시고, 첨부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 선 군 수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서식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8 참고)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2> 주민세 사업소분(구.재산분) 명세서(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참고)

-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사업장면적 330㎡이하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만 기재
330㎡ 초과는 1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임차 사업장, 건축물대장 없는 시설·무허가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① 연면적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건축물대장 첨부)

- 건축물 밖의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저장창고), 저장조 등)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결과 통보문 등 첨부)

② 과세제외 면적 : 예시) 기숙사 : 250㎡

- 과세제외 대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면적을 계산한 건물 평면도 및 사진 등 첨부)

③ 산출세액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 과세면적 × 250원 : 과세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음.

<서식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7 참고)

○ 면세점(2015년 이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월 통상인원수)가 50명이하인 경우 면세

※ 2020년 지방세법 개정

구분	개정 후(2016.1.1. 이후)	개정 후(2020.1.1. 이후)
면세기준	월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

* 월급여 총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 종업원의 의미

- 종업원이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계약이라 함은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관계를 말하고 상시·수시 고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간급·일급·월급·연봉 등 지급형태나 방법을 불문함

- 수시 고용인원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예시)

$$\text{월 통상인원} = \frac{\text{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text{해당 월의 일수}} \times \text{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예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

④ 공제액 : 공제액=(신고한 달의 종원업 수-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월 적용급여액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⑤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④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 ※ 2020.1.1.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	--	---------	--	------	--

(단위 : 원)

구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세 액	③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차인 세액 (②-③)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297mm×210mm[보존(2종)70g/㎡]

(단위 : m², 원)

[illegible]297mm×210mm[보존(2종)70g/m²)]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총지급 급여액	급여														
	상여														
	④소계														
② 과세 제외 급여	연장														
	차량														
	⑤소계														
③ 종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급여총액 ⑥=(②-⑤)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⑦=⑥×(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보존(2종)70g/m²]

[별표]

(1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세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사실 판단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세무조사의 대상 신설(안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나.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일 변경(안 제38조제1항)

- 7일 → 20일

라. 세무조사결과 통지사항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1호 ~ 제3호)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5호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처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 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갑), 제9호(을) 제10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병)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u>강원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 ----- -----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 -----.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 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효완성정리처리</u>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 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 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 에 따른다.	제14조(<u>정리보류</u>) ----- -- <u>정리보류</u> 는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 <u>정리보류표</u> -----.
제15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u>	제15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u> 를

현행	개정안
<u>분</u>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u>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u>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u>강원도지사</u>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른다.	----- ----- <u>정리보류 취소액</u>----- ----- ----- -----. 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u>를 ----- ----- ----- ----- <u>정리보류</u>를----- -----.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 <u>강원특별자치도지사</u>----- ----- ----- -----.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 징수(부과)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 · 감액 통지 또는 납 세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 액 통 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 입 년 도		년도 정선군 세입		
	항 목		결 정 내 용	본 세	가 산 금	계	
			세 액				
			가 산 세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시(군) 읍·면(동) (도로명 주소)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 액	월 까 지 목표 액	추 경 목표 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포함)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 환급금	
				본월 분	본월분까 지 누계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대년 간	대월 간	대조 정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 세															
00 세															
과년도 합계															
소계															
00 세															
00 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갑) 서식]

(앞 면)

정 리 보 류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 당	과 장	징수관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일	조 사 자			성 명	서 명	
			직 급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 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갑) 서식]

(뒷 면)

정 리 보 류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	성명(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 원)					
(단위 :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지방세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 납 요 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반영(안 제13조 ~ 제16조)

- 결손 → 시효완성정리, 결손처분 → 정리보류